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구~~ 차 관

편 집: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서울특별시종합촬영소

전 화 75-6090

제 473 호

1974. 12. 10.

시 보

차 례

○ ◎ 조 례

제 898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고 시

제 180 호: 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사업구역지적승인고시 13

◎ 공 고

제 255 호: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장 및 서부소방서장인

공고 20

제 259 호: 영등재 2 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공고 21

○ ◎ 사 령 2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공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4. 12. 10

◎서울특별시조례제 898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
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골프연습장" 다음
에 "마술장"을 제2호 "전람"
다음에 "이동판매 및 대여"를 각
각 삽입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
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운동장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운동장장(이하 "장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장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제2
호서식에 의한 운동장시설사용허가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2일 이상 계속할 때에는" 다음에
"장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사
용료를"를 삽입한다.

①운동장시설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허가신청시에 사용료의 기
본액을 장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장장은 전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전용시간) ①운동장의 일
일전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 08:00 부터 18:00 까지

야간 19:00 부터 23:00 까지

②전용자가 전항에 규정한 전용시
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용시간 전부를 사용한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3 (초과사용료) ①전용자가
전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1시간당 야간기본액
의 1/5를 초과사용료로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전용자가 주야간 계속전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간과 야간의 중

간시간의 사용은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열람할 때에는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1을 추징한다. 이 경우 1시간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 9 조 제 3 항중 "학생" 다음에 "(고교이하)의"를 삽입하고 동항 단서중 "일반인관람료를 초과할 수 없다"를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로 한다.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는 관람료수입총액(전용자의 초대권에 의한 입장의 경우에는 이에 산입하며, 입장세는 공제한다. 이하 같다)의 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관람료수입총액이 전용료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전항의 부항제에 의한 1회 사용료가 20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체육경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주간과 야간을 계속하여 사용할때에는 이를 1 회로 본다.

1. 20 만원 초과 50 만원까지의 금액 10 % 할인
2. 50 만원 초과하는 금액 20 % 할인

제 13 조를 삭제한다.

제 14 조중 제 1 호 및 제 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자가 전용허가권 받은후 전용일 7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장장은 징수한 사용료(기본액)의 5 할을 반환한다.

3. 제 1 항의 경우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별표 및 별지사식용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기본액)를 납부한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운 동 장 사 용 료

(1) 전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 용 목 적 주 야 간 구 분	토,일요일 공 휴 일	평 일	비 고
서울육상장	체 육 경 기			
	주 간	14,000	11,000	
	야 간	16,000	12,000	
	잔 디 그 라 운 드			
	주 간	32,000	24,000	
	야 간	35,000	27,000	
	체 육 이 외			
효창육상장	주 간	94,000	72,000	
	야 간	110,000	80,000	
	체 육 경 기			
	주 간	12,000	9,000	
	야 간	13,000	10,000	
체 육 이 외	주 간	75,000	58,000	
	야 간	83,000	63,000	
야 구 장	체 육 경 기			
	주 간	14,000	11,000	
	야 간	16,000	12,000	

구 분 경기장별	사 용 목 적 주 야 간 구 분	토, 일요일 공휴일	평 일	비 고
	체 육 이 외 주 간 야 간	94,000 111,000	72,000 80,000	
정 구 장	정 구 경 기 주 간 야 간 정구 이외 체 육 주 간 야 간 체 육 이 외 주 간 야 간	4,000 5,000 6,000 7,000 44,000 37,000	3,000 4,000 5,000 6,000 26,000 28,000	
배 구 장	배 구 경 기 주 간 야 간 배구 이외 체 육 주 간 야 간 체 육 이 외 주 간 야 간	3,000 4,000 5,000 6,000 22,000 24,000	2,000 3,000 4,000 5,000 17,000 19,000	

구 분 경기장별	사 용 목 적 주 야 간 구 분	토 · 일 요 일 공 휴 일	평 일	비 고
수영장	수영			
	주간	29,000	22,000	
	야간	31,000	24,000	
	수영의외 체육			
	주간	19,000	15,000	
	야간	21,000	16,000	
	체육 이외			
아동놀	주간	38,000	29,000	
	야간	42,000	32,000	
	수영			
	주간	7,000	5,000	
	야간	8,000	6,000	
	수영의외 체육			
	주간	5,000	4,000	
스케이트장	야간	6,000	5,000	
	체육 이외			
	주간	14,000	11,000	
	야간	16,000	12,000	
	각종 경기			
	주간	32,000	24,000	
	야간	35,000	27,000	
잠충체육관	체육 경기			
	주간	14,000	11,000	
	야간	20,000	15,000	
	체육 이외			
	주간	71,000	54,000	
마술장	야간	85,000	65,000	
		3,500	3,000	

(2) 이 용 료

경 기 장 별	연습자구분	단 위	금 액	비 고
육 상 장	개 인	1 인 2 시 간 당	50	
	단 체	2 시 간 당	2,000	
야 구 장	단 체	2 시 간 당	3,000	
정 구 배 구 장		1 코트 2 시 간 당	600	
일 반 볼	개 인	1 인 2 시 간 당	100	
아 동 볼	개 인	1 인 2 시 간 당	50	
탁 구 장		1 대 당 1 시 간 당	100	
스 케 이 트 장	일 반 연	1 인 2 시 간 당	60	
	아 름	1 인 2 시 간 당	30	
트 테 닝 섀 타	일 반	1 인 2 시 간 당	100	
	회 원	1 월 당	2,000	
골 프 연습 장		1 박 스 (24 개)	100	
장 충 체 육 관	개 인	1 인 2 시 간 당	500	
	단 체	2 시 간 당	3,000	
마 술 장		1 인 1 시 간 당	100	

*아동은 국민학생이하 또는 13세 이하에 한한다.

(3) 입 장 료

경 기 장 별	단 위	금 액	비 고
각 경 기 장	1 인 1 회	20 원	

(4) 중 제 방 송 기 본 액

종 류	구 분 (국제, 국내)	중 제 방 송 료	
		테 레 비	라 디 오
프로 레 스 링	국 제 경 기	48,000	24,000
	국 내 경 기	18,000	9,000
프 로 권 투	국 제 경 기	48,000	24,000
	국 내 경 기	18,000	9,000
농 구	국 제 경 기	24,000	12,000
	국 내 경 기	6,000	3,000
야 구	국 제 경 기	24,000	12,000
	국 내 경 기	6,000	3,000
축 구	국 제 경 기	36,000	18,000
	국 내 경 기	6,000	3,000
배 구	국 제 경 기	12,000	6,000
	국 내 경 기	3,000	1,500
아 마추 어 권 투	국 제 경 기	18,000	9,000
	국 내 경 기	3,600	1,800
기 타 경 기	국 제 경 기	6,000	3,000
	국 내 경 기	1,200	600
채 육이외 행사		48,000	24,000
테레비 녹화			
라디오 녹음			
경기 또는 행사 활용			

(5) 상행위상위 사용료			
종	류	사 용 료	
(1)	운동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촬영행위	○ 주 간 20,000 원 야 간 30,000 원 (전용의 경우에 준한다)	
(2)	에드바론 및 유사물제양에 의한 광고행위	○ 1 개 1 일 간 2,000 원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프로그램판매 행위	○ 장내 반입부수에 1 부당 가격의 곱한 금액의 2 할 상당액	
(4)	기 타 (선전, 광고, 게시, 전람, 물품판매, 대여 기타행위)	○ 계약자위 연간계획서에 의한 수수료금의 (원가를 제외한 금액) 2 할	
(6) 부속설비사용료			
종	별	단 위	금 액
나	이	1 회	36,400 원
전	기		관 하 요 금
과	성	1 회 1 개	2,000 원
경기장및기타시설			관 하 요 금
조명			
냉	방		관 하 요 금
난	방		실제사용한 유류대금 (고시가격에 의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시립운동장시설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청	사용코저 하는시설	운	동	장	명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							
	부대시설	라	디오	중	계	조	명					
				중	계	화	성	기				
		라	디오	녹	음	나	이	타				
				녹	화	난	방					
경		기	행	사	화	영						
상		행	위									
내 용	관 랑 권	특	별	관	람	권	원	예	매	차	비	고
		일	반	관	람	권	원					
		군	경	학	생	권	원					
		초	대	권	원							
		단	위	권	원							
		일	반	군	경	학	생	원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신 청 인

㉠

(전화)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통

별지제 2 호서식

시립운동장 시설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사용허가의 시설

운동장명	목 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비 고

3. 사용허가의 부대설비

설비명	수 량	설비명	수 량	설비명	수 량	설비명	수 량	비 고
중계방송		확성기						
T V 중계		난 방						

4. 관 랐 권

구 분	금 액	매 수	구 분	금 액	매 수
특별관람권			단체권	일 반	
일반관람권				군경학생	
군경학생권			초 대 권		

5. 사 용 료

구 분	금액 (기본액)	산 출 기 초	비 고
건 용 료			
부대설비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삼행위사용료			
계			

6. 조 건

위와 같이 허가함.

197

서울특별시립운동장장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구역지적 승인고시

1. 건설부 고시 제 470 호 (73. 12. 1)
로 구역지정된 청운제1동 174 개
구역의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
업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

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
량 2 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2. 6

서울특별시 장

지 적 승 인 고 시 내 역

번호	구 번 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 시 면 적	지적 고시 면 적	과 유	비 고
1	1 - 1	청운제 1	청운동 23 번지	19,100 [㎡]	15,250 [㎡]	측정결과확정	
2	1 - 2	청운제 2	청운동산 4	36,700	28,820	"	
3	1 - 3	옥인 구역	옥인동산 3	67,700	68,930	"	
4	1 - 4	누상 "	누상동산 1 - 3	26,200	34,350	"	
5	1 - 8	동송 "	동송동산 2 - 10	91,300	91,300	"	
6	1 - 9	이화 "	이화동 9, 창신동 1	30,700	28,700	"	
7	2 - 1	원동 "	원동 3가 27번지 일대	2,700	3,090	"	
8	2 - 2	회현 "	회현동 1가산 1-2번지	7,800	8,690	"	
9	3 - 1	창신제 1	창신동 9 일대	78,200	66,700	"	
10	3 - 2	" 2	창신동 59 5 일대	24,800	19,260	"	
11	3 - 3	" 3	창신동 62 6 40 일대	77,700	86,450	"	
12	3 - 4	" 4	창신동산 6 일대	64,800	63,000	"	
13	3 - 5	보문제 1	보문동 33 일대	6,300	6,300	"	

번호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 시 면적	지적고시 면적	사	유	비 고
14	3-6	보문제2	보문동	209 일대	20,900	16,940	축	향	결과확정
15	3-8	창신제5	창신동	400 일대	11,400	12,860	"		
16	3-9	신설구역	신설동	92 일대	6,960	6,960	"		
17	3-11	제기제1	제기동	857 일대	22,800	27,940	축	향	결과확정면적
18	3-12	" 2	제기동	산 3 일대	9,000	5,580	"		
19	3-13	" 3	제기동	192 일대	13,900	19,820	"		
20	3-15	전농제1	전농동	588 일대	29,100	25,620	"		
21	3-16	담십리제1	담십리동	480 일대	13,600	13,600	-		
22	3-17	청량리제1	청량리동	205 일부	29,100	18,520	축	향	결과확정면적
23	3-19	" 3	청량리동	61	14,900	17,200	"		
24	3-20	전농제2	전농동	127 일대	13,300	15,500	"		
25	3-21	" 3	전농동	7 일대	56,200	53,900	"		
26	3-22	휘경구역	휘경동	1049 일대	4,600	7,570	"		
27	3-23	면목제1	면목동	산 378 일대	20,900	23,420	"		
28	3-25	회기구역	회기동	110	13,900	14,840	"		
29	3-26	면목제2	면목동	산 72 일부	6,700	13,880	불	향	주택군
30	3-27	담십리제3	담십리	49 일대	52,900	61,030	포	합	시행
31	4-1	신당제1	신당동	2 산 6 일대	156,700	149,690	"		축향결과확정면적
32	4-2	" 2	신당동	432 일대	76,600	72,430	"		
33	4-3	" 3	신당동	산 37 일대	150,700	175,630	"		
34	4-4	하왕제1	상왕산	5, 하왕 1000	249,600	178,300	"		
35	4-5	" 2	행당	317, 하왕 산 12	148,500	101,890	"		
36	4-6	금호제1	금호산	37, 행당산 30	152,700	148,550	"		
37	4-9	" 3	금호산	2, 금호 97 일대	80,800	64,650	"		
38	4-10	" 4	금호산	2 ~ 4 일대	89,800	45,200	"		

번호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 시 면 적	지정고시 면 적	사 유	비고
39	4-11	옥수제 1	옥수동 424 일대	66,000	58,500	측량결과확정면적	
40	4-12	" 2	옥수동산 5 일대	174,600	53,890	"	
41	4-13	" 3	옥수동 124,421 일대	91,700	88,920	"	
42	4-14	" 4	옥수동산 5 일대	43,300	41,720	"	
43	4-15	" 5	옥수동산 6 일대	33,900	34,120	"	
44	4-16	" 6	옥수동산 1, 2 일대	49,500	71,190	"	
45	4-17	사근구역	사근동 305,309 일대	20,400	23,350	"	
46	4-19	오금구역	오금 396,389 일대	21,400	55,630	구역지정시면적 산정착오	
47	4-20	가락구역	가락동 175 일대	34,700	33,620	측량결과확정면적	
48	4-21	마천제 1	마천동산 5 일대	31,000	30,320	"	
49	4-22	" 2	마천동 205 일대	49,700	56,160	불량수택군포 합시행	
50	4-23	" 3	마천동 323 일대	4,700	11,600	지정시구역 산정착오	
51	4-24	거여제 1	거여동 288 일대	22,000	29,570	측량결과확정면적	
52	4-25	" 2	거여동 181 일대	80,200	75,380	"	
53	4-27	" 3	거여동 155 일대	15,000	41,270	구역지정시산정착오	
54	5-1	논암제 1	논암동산 48-27 일대	55,000	47,410	측량결과확정면적	
55	5-2	삼선구역	삼선동 274 산 48	93,800	91,070	"	
56	5-3	동선구역	동선동 85 일대	21,000	21,000	"	
57	5-4	동소문구역	동소문 58,606,616 일대	270,200	276,160	"	
58	5-5	돈암제 2	돈암동 124-5 산 1, 3, 7	125,700	82,660	"	
59	5-10	정능제 1	정능동산 87-310 일대	13,600	13,400	"	
60	5-11	미아제 1	미아동 837 산 103, 105, 106	363,800	365,170	"	
61	5-17	상계제 1	상계동 154, 161 일대	91,400	135,080	구역지정시산정착오	
62	5-18	" 2	상계동산 152 일대	127,400	133,400	측량결과확정면적	
63	5-19	" 3	상계동산 107 일대	59,000	64,820	"	

번호	구역 번호	구역 명칭	위 치	구역 지정 지면적	자적고 지면적	사 유	비고
64	5-20	상계제 4	상계동 80 일대, 중계동 246 일대	11,400	10,040	측량결과확정면적	
65	5-21	" 5	상계동 112, 113 일대	17,200	18,430	"	
66	5-23	중계제 1	중계동 산 104	78,400	104,060	구역지정시면적 착오	
67	5-24	" 2	" 288 일대	14,200	14,200	-	
68	5-25	" 3	" 426 일대	9,800	15,590	측량결과확정면적	
69	5-29	도봉구역	도봉동 90 일대	59,300	56,540	"	
70	6-1	녹번제 1	녹번동 4-8 일대	74,400	82,000	구역지정시면적 착오	
71	6-2	" 2	" 산 1 일대	78,300	106,680	"	
72	6-3	홍은제 1	홍은동 산 1 일대	33,100	32,520	측량결과확정면적	
73	6-4	" 2	" 1 동 809 일대	176,100	168,230	"	
74	6-5	" 3	" 10 - 11 일대	192,000	192,000	-	
75	6-6	" 4	" 1 동 17, 24 일대	89,900	94,220	측량결과확정면적	
76	6-8	홍제제 1	홍제 3 동 산 1 - 33 일대	45,000	50,790	"	
77	6-9	" 2	" 1 동 277, 287 일대	68,200	59,890	"	
78	6-10	" 3	" 2 동 132 일대	74,800	77,960	"	
79	6-11	" 4	" 105 일대	89,800	107,470	"	
80	6-12	" 5	" 40 일대	102,000	94,100	"	
81	6-13	" 6	" 1 동 369 일대	27,000	33,420	"	
82	6-14	" 7	" 322 일대	17,500	19,050	"	
83	6-15	" 8	" 157 일대	86,900	91,250	"	
84	6-16	" 9	" 2 동 79 일대	173,500	193,670	"	
85	6-17	" 10	" 44 일대	144,400	148,200	"	
86	6-18	용암제 1	용암 1 동 178 일대	44,500	52,980	"	
87	6-20	홍은제 6	홍은동 2, 66	15,700	19,270	"	
88	6-22	현저제 2	현저 2 동 산 12-17	90,000	90,000	"	

번 호	구역 번호	구역 명칭	위 치	구역지정 시 면 적	면 적	고 지	사 유	비 고
89	6-23	천연제 1	천연동 4	85,500	98,650		측량결과확정면적	
90	6-24	" 2	천연산 4-1	64,600	72,320		"	
91	6-25	병 천	병천동 74-25	40,600	39,630		"	
92	6-26	북아현제 1	충정 7 북아현 3 동산	58,500	46,310		"	
93	6-27	충 정	충정로 545	17,500	18,030		"	
94	6-29	북아현제 3	북아현 3,1	71,600	65,600		북아현교회부자재취	
95	6-30	" 4	북아현 212	24,900	22,950		측량결과확정면적	
96	6-31	대 현	대현 56-40	6,300	6,630		"	
97	6-32	창천제 1	창천 4	14,500	15,070		"	
98	6-33	" 2	창천 68, 69, 83	62,100	57,260		"	
99	6-34	" 3	창천동 57	52,400	2,400		-	
100	6-35	신사제 1	신사동산 93	36,400	46,600		신사PT건설로잡지포함	
101	6-36	연회제 1	연회 2 동산 65 일대	85,100	186,040		무허가건물포함시행	
102	6-37	" 2	연회 1 동산 66-15 일대	42,100	79,560		불량주백군포함시행	
103	6-38	" 3	연회 1 동 182 일대	147,900	159,700		측량결과확정면적	
104	6-39	" 4	연회 1 동 537, 523 일대	194,900	263,440		"	
105	6-42	남가좌제 3	남가좌동 105	42,100	47,710		"	
106	6-43	" 4	남가좌동 237	25,700	25,700		-	
107	6-44	북가좌제 1	북가좌동 131, 144	145,500	146,780		측량결과확정면적	
108	6-45	수색제 1	수색동 163	126,300	117,140		"	
109	6-47	송 월	송월동 2	6,040	6,850		"	
110	6-48	만 리	만리동 198, 199	26,300	29,220		"	
111	6-49	신사제 2	신사동산 46, 93	80,600	84,190		"	
112	6-50	용암제 3	용암동 397	145,500	125,590		"	
113	6-51	상 암	상암동 2, 21	40,700	54,640		불량주백군포함시행	

번호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 시면적	지정고지 면적	산	유	비고
114	6-52	송암제 4	송암동 26, 3	일대	226,100	220,400	측량결과확정면적		
115	6-53	북가라제 2	북가라동 100		19,200	19,200	"		
116	6-54	수색제 2	수색산 30 - 2		41,900	41,900	"		
117	7-1	도 화	도화동 2		198,000	171,480	"		
118	7-2	신 공 덕	신공덕동 1		108,000	120,940	불량주택근포함시		
119	7-3	아현제 1	아현 1 동 85		135,000	138,840	측량결과확정면적		
120	7-5	노 고 산	노고산 12		70,400	68,320	"		
121	7-6	창 전	창전산 2		127,900	129,940	"		
122	7-7	망 원	망원동 57		45,000	42,500	"		
123	8-1	후암제 1	후암동 10 - 6		11,200	11,200	-		
124	8-2	" 2	후암동산 11 - 114		119,100	140,440	측량결과확정면적		
125	8-3	용산제 1	용산 2 가 1 - 3		399,900	196,440	구역지정시면 적산정착오		
126	8-4	이 태 원	이태원동 250		56,600	51,520	측량결과확정면적		
127	8-6	청 파	청파동 3가 118 - 56		1,900	3,040	현 APT부지전체포함		
128	8-7	보 광	보광동 265 - 992		111,100	96,510	불량주택지역포함		
129	8-8	한남제 2	한남동 620 - 6		89,300	96,821	"		
130	8-10	서빙고제 2	서빙고 241 - 31		9,100	7,260	측량결과확정면적		
131	8-12	효창제 1	효창동산 1		19,900	26,440	"		
132	8-13	" 2	효창동산 149		12,100	16,230	"		
133	8-14	도 원	도원동 413		67,300	78,780	"		
134	8-15	삼 천	삼천동 106 - 32 일대		9,300	11,320	현 APT 지역포함		
135	8-16	원 효	원효 3 가 50 - 1		14,300	29,230	측량결과확정면적		
136	8-18	신 제	신제동 1 - 1		15,000	17,780	주변불량주택 지역 포함		
137	9-1	흑석제 1	흑석동산 1 일대		89,000	89,000	-		
138	9-3	" 2	흑석동 172 일대		7,300	7,300	-		

번호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시 면 적	저적교시 면 적	사 율	비 고
139	9-4	본동제 1	본동 126	149,900	192,870	추량결과 확정면적	
140	9-5	제 2	본동산 11	147,800	153,030	"	
141	9-6	상도제 1	상도산 15	105,700	103,710	"	
142	9-7	본동제 3	본동 286	17,400	19,930	"	
143	9-8	노량진	노량진 314	219,100	204,980	"	
144	9-9	상도제 2	상도 558	1,900	2,110	"	
145	9-10	대 방	대방 458	13,700	14,690	"	
146	9-21	상도제 3	상도 477	1,900	1,720	"	
147	9-22	상도제 4	상도산 47	89,400	93,380	"	
148	9-23	제 5	상도 123 번지	74,600	79,920	"	
149	9-24	봉천제 1	봉천 1 동일대	165,400	172,070	"	
150	9-25	상도제 6	상도 122	7,600	14,330	"	
151	9-26	봉천제 2	봉천산 94	92,600	94,380	"	
152	9-27	제 3	101	172,300	180,250	"	
153	9-28	제 4	"	325,800	335,200	"	
154	9-31	상도제 8	상도산 74	60,900	60,900		
155	9-32	사당제 1	사당산 11	42,900	45,060	"	
156	9-33	제 2	24	130,100	149,160	"	
157	9-42	신림제 1	신림산 101	165,500	235,790	불량주택 포함시	군령
158	9-45	봉천제 6	봉천산 23	15,800	26,610		
159	9-46	제 7	봉천산 81	166,800	176,930	추량결과 확정면적	
160	9-47	사당제 4	사당산 12	185,300	195,230	"	
161	9-49	신림제 2	신림산 79	99,300	98,200	"	

번호	구역번호	구역명칭	위 치	구역지정시 면 적	지 적 고시 면 적	사 유	비고
162	9-50	신림제 3	신림산 402	71,600	60,470	특별결과확정면적	
163	9-51	신림제 4	" 29	12,600	25,200	"	
164	9-41	신정제 4	신정동 136-1	46,300	37,740	"	
165	9-53	상도제 9	상도산 64	42,000	38,580	"	
166	9-52	신정제 5	신정산 28	42,900	39,070	"	
167	9-12	신길제 2	신길 233	163,100	166,960	"	
168	9-13	신길제 3	신길산 137	81,700	123,780	"	
169	9-15	영 동 포	영동포 14	1,400	2,520	"	
170	9-16	당산제 1	당산 3 번지	8,000	8,000	"	
171	9-18	당산제 2	당산 121 번지	30,270	10,270	"	
172	9-19	구 루	구로 315	24,200	24,200	"	
173	9-34	시흥제 1	시흥산 31	202,700	198,930	"	
174	9-43	시흥제 2	시흥 100-1 일대	200,800	344,020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55 호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장
및서부소방서장인공고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 제 2 조

의 규정에 위거 북부소방서장 및
서부소방서장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
별시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위거
이를 공고한다.

1974. 12. 9.

서울특별시장

1. 공인사용일시 74.12.10 09:30

2. 공인의 인영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장인

북부소방서장제인



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부소방서장인

서부소방서장제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259 호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공고

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교제 41 호

(74.3.30)로 영동제 2 지구 (추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3 조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
아오니 사업에 유익한 의견 있으
시면 사업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
정리 2 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3. 위 공람 공고내용에 대하여는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별
발송될 것이다. 비수령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 사 업 계 요 -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영동 제 2 지
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사업시행지구 : 성동구대치동

다. 시행면적 : 25,000 평

라. 시행기간 : 74.12. 인가일로부
터 - 76.12.31

(2 개년)

1974.12.10

서울특별시장

사 명

◎ 1974.12.6

성 북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김 봉 예
전라남도 광산군 전출을
명함.

◎ 1974.12.9

세 정 과 지방행정 주 사 보 국 윤 호
운수 3 과 파견 근무를 명
함. (74.12.9~75.1.31까지)

◎ 1974.12.10

법 무 법 제 제 장 이 대 수
담 당 관 실 (지방행 정 사무관)
지하철본부 경리과 관제
제장에 포함.

지방행정사무관 시보에임함. 김 광 치
1 호봉을 급함.

법무담당관실 법제제장에
포함.

지방행정사무관 시보에 이 시 용
임함.

1 호봉을 급함.

동원담당관실 동원 1 제장에
포함.

도 봉 구 지방건축 사 양 해 준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항,
1,2 호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기 사 보 이 태 봉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항,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 등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서 임 원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항
1,2 호에 의하여 견책을
처함.

도 봉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김 진 환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항,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철도 원 시 보 송 병 용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지하철본부 지방철도 원시보 용성만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영선과 지방기계사 이재호 (시민회관 검무중) 검무처 근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전기사 이영주 (시민회관 검무중) 검무처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이재식 보건소 주사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신현호 주사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급수과 지방토목 경순홍 기사보시보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1호용목 급함. 급수과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